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1. 주요 내용

- 가.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한도를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상향하고,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에서 30배 이내로 대폭 상향함(안 제32조제1항).
- 나.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업무를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4호,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).

2.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전문기관”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, 제21조, 제31조제3항, 제33조제1항,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.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- ----- -----.
5. ~ 9. (생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, 제	제22조(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

21조, 제31조제3항, 제33조제1항,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, 연구자,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(연구지원은 제외한다)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<신 설>

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부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
분) ① -----

-20년

-30배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6조의2(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 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